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81
----------	-------

발의연월일 : 2026. 6. 16.

발 의 자 : 조배숙 · 강승규 · 고동진
김성원 · 정동만 · 박충권
나경원 · 곽규택 · 이만희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부분에 대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6.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또한, 공직선거법은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발송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위탁선거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음.

이에, 제28조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발송횟수를 제한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메시지를”를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로, “방법”을 “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8회(예비후보자등이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다.

제66조제2항제5호 중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을 “통화방법, 시간대 또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횟수 제한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위원회가 위탁신청을 받은

위탁선거부터 적용한다.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4. (생략)</p> <p>5. 제28조에 따른 <u>통화방법</u> 또는 <u>시간대</u>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p> <p>6. ~ 13. (생략)</p>	<p>②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통화방법, 시간대 또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횟수 제한을</u>----- ---</p> <p>6. ~ 13. (현행과 같음)</p>
--	---